

【 2016.1.25(월) 강원일보 】

**부고**

▲윤명중(자영업)·기중  
(태백 태서초교 행정실  
장)·미영(강원지방우정청  
감사관실)씨 부친(윤병혁  
씨)상, 정세철(대한건설협  
회도회사무처장)씨 장인  
상=24일 오전 8시30분 별  
세. △발인=26일 오전 9시  
△장지=국립이천호국원  
△빈소=강릉아산병원 장  
례식장 102호 △연락처=  
010-5375-8246

【 2016.1.25(월) 강원도민일보 】

—• 명복을 빕니다

◆윤병혁(87세)씨 별세,명  
중(자영업)·기중(태백 태서  
초 행정실장)·선옥·미선·미  
영(강원우정청 감사관실) 부  
친상, 최성남·정숙자(경포고

행정실) 씨 시부상,정세철  
(건설협회 도회 사무처장)·김  
원삼(자영업)씨 빙부상=24  
일 별세 △빈소 강릉 아산병  
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6  
일 △장지 이천 호국원 △연  
락처.010-5375-8246

# 과다설계 요인 제거·적정 공사비 통해 사전방지 이뤄져야

예산과 실행 간의 괴리 커  
설계점수 강제차등제 확대  
가격보다 기술·품질경쟁 돼야

정부가 유찰로 얼룩진 기술형입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사실 유찰사태가 본격화된 건 이미 지난 2013년부터.

1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이 무려 7번 씩이나 유찰되는 상황이라,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시선도 많다.

그나마 예산을 견 제부와 집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국토부가 마리를 맞췄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형입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전에 유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유찰되는 공사에 대한 후속처리 대책이다.

후자부터 보면, 정부가 마련키로 한 합리적인 수의계약 전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구축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7번 유찰된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를 비롯, 3차 공고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와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1공구 등 이미 장기 지연사태에 빠진 건설공사의 추가 지연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으로 돌아선 올림팩플러자·건립공사와 같이, 준공기한이 절대적인 프로젝트의 집행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은 발주자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자칫 특허나 로비 등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정립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반복 유찰을 겪었거나 유찰이 우려되는 공사에 대한 대책보다는 사전에 유찰을 방지하고,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 및 계획 수립단계서부터 과다설계 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성과요구 조건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삭감 일변도의 총사업비 검토 및 계약상사 등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비(예산)와 시공사의 실행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업계는 진단했다.

이와 함께 입찰집행단계에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업계는 무엇보다 저가투찰 및 덩핑수주를 부추기는 '최저가'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적정 공사비를 규정한 후 가장 품질이 우수한 입찰제안을 채택하는 확정가격 최

상설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찰자 결정방법 중 가격비중이 높은 공사일수록 저가투찰 우려로 인한 유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계(기술)점수 강제차등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전환은 최선이러기보다 차선책인 만큼 경쟁을 통해 유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보장을

전제로 가격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ang@

수의계약카드 왜 나왔나

## 준공 지연·안전성 훼손 부작용 최소화 위한 계산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낙찰자 결정방법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활성화하고 강제차등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해놓고 건설사가 제출한 기본설계를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질계약자(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유찰의 원인이 되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과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발주기관들이 품질·기술보다는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춘 탓에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정부가 올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확대 적용을 예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이 지상과제인 발주기관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강제차등제는 각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평가 원점수를 일정 비율에 따라 차등 환산점수화하는 것으로,

적정공사비 보장은 장담 못해 기존 비용 고집땀 '악발' 의문

6% 이상 적용할 경우 저가투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지도 예산 절감을 내세운 발주기관의 입장에 딱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강제차등제가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유찰이 잇따를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앞서 유찰된 기술형입찰에 대해 기타공사(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입찰방법을 변경, 추진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방법 변경에 따라 발주기관 입장

에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낮출 수 있지만 입찰방법이 바뀔 경우 준공지연은 물론 시공품질 하락, 시설물 안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타공사 변경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이 같은 부작용을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수의계약 전환 이후에도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발주기관은 기존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크고 실행결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의 악발도 막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 전환 사례를 보면 발주기관이 기존 낙찰가격을 내세워 협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일관한 수의계약을 위해선 발주

기관이 코스트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종합평가낙찰제' 세부 시행기준 이번주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중평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이번주에 발표된다. 시행 기준은 별도의 예규로 제정될 예정이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중평제' 시행 근거를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평제는 가격 위주의 평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

을 유발하면서 덩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시켜온 데 따른 대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주(22일)에 조달청 등과 중평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달 중에 최종안(예규)을 마련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평제 시행기준은 기존 계약예규가 아닌 별도의 예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된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종래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공기 지연 또는 정밀 발굴조사 전환 시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을 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아하! 그렇구나

선급금이행보증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Q** A사는 B사에 건축공사시공을 도급주었고,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주기로 하였다. B사는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C사로부터 발급받아 A사에 교부하였고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B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공사현장은 다른 시공업자가 장악하고 자신들이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며 B사의 작업을 방해하였고, A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던 중 공사는 결국 다른 업자가 시공하였다. 그 후 A사는 B사가 공사를 부당히 중단하였다고 하며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A사는 C사에도 선급금이행보증보험에 기하여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의 약관에는 'C사는 보험계약자(B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A사)가 반환받아야 하는 선급금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선급금반환의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반환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없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선급금반환에 관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사례의 경우를 보면 도급인(A사)과 수급인(B사) 사이의 도급계약은 결국 해지되고 수급인은 선급금 중 정산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것은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려고 현장에 가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다른 업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제거하여 줄 의무가 있는 도급인은 결국 그 방해를 제거해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수급인 B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B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사의 도급계약 해지의 정당성도 문제될 수 있겠으나 결국 다른 업자가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A, B 사이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B사는 선급금 중 미정산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C사가 보증한 선급금반환의무는 B, C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약관에 의하면 'C사는 보험계약자(B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A사)가 반환받아야 하는 선급금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수급인) B사가 주계약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급금반환의무가 생긴 경우에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보험자(도급인) 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규정도 있는데 본 사례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C사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급금이행보증의 경우에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삼흥, 태백산 천제단서 수주·안전 기원제



강원소재 (주)삼흥(대표이사 서현길)은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서 2016년도 수주달성 및 무재해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장병욱 상무는 "올해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 목표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무재해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이번 기원제를 통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건설경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